

생활폐기물 배출안내

종량제봉투는 동별 지정된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을 준수하여 내 집, 내 점포 앞에 배출하세요.

화, 목, 일 배출

동 명	수거업체
왕십리1·2동, 송정동	신흥환경
도선동, 용답동	나라환경산업
마장동, 금호3가동, 용답동(자동차매매센터)	성동환경
옥수(리버젠, 파크힐스), 성수2가1동	고려도시개발

월, 수, 금 배출

동 명	수거업체
행당2동, 금호1·2가동	신흥환경
사근동, 행당1동, 성수1가1동	나라환경산업
성수2가3동	고려도시개발
성수1가2동	신흥환경 / 고려도시개발 (JDX방면 / 방통대방면)
응봉동, 금호4가동, 옥수동(리버젠, 파크힐스 외)	성동환경

※ 지정요일 저녁 8시 ~ 밤 12시에 배출 (토요일 오전 0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금지)

※ 배출일시를 준수하여 내집, 내 점포 앞에 배출 (공동주택은 단지 내 지정된 장소)

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

관련법규

폐기물관리법 제8조(무단투기 금지), 제15조(성질, 상태별 분리배출), 제68조(과태료 부과)

위반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

위반유형	과태료
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	50만원
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	50만원
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	20만원
배출요일 위반 및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 미분리 배출행위	10만원
담배꽂초 및 기타 휴지, 오물 등을 버리는 행위	5만원

쓰레기 혼합배출 금지

종량제 봉투 속 마구 버려지는 재활용품과 음식물만 분리 배출해도
쓰레기 20% 줄일 수 있습니다.

❗ **무단투기** 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, 음식물을 **혼합배출**하면 소각장 반입이 거부되며, **1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가내공업폐기물(소규모 영업점 폐가죽, 폐원단, 폐고무 배출)의 경우 인적사항(성명, 주소, 연락처)을 기재하여 **영업용 규격 종량제봉투**에 버려주세요.

혼합배출 사례



❗ **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**는 **특수마대**로 버려주세요.

1

깨진 유리, 도자기류,
화분, 흙, 내열유리

2

재활용 할 수 없는 지저분한
병, 캔, 플라스틱 등

3

코팅된 물질, 축구공,
뚫자리, 다량의 노끈 등

4

페인트통, 폐벽지, 신발,
고무합성제품, 피혁, 솜이불 등

혼합배출 사례



종량제 봉투 및
특수마대 판매처

성동구 홈페이지 ▶ "봉투" 검색 ▶ "종량제 봉투 및 특수마대 가격/판매처" 클릭 ▶ 파란색박스
"종량제 봉투 및 특수마대 판매소 동별현황" ▶ 하단 첨부 엑셀파일

* 특수마대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일 경우 **대형생활폐기물**로 신고 후 배출해주세요.

*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방법 : 성동구청 홈페이지 접속, 전화접수(02)2248-1001, 스마트폰 앱 "여기로"신청